북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공 보

제1142호 2023. 3. 22. (수)

공 고

제2023-348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2023-352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22

제2023-357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25

공람										

발행 : 부산광역시 북구 편집 : 미래전략실 (☎309-5411)

공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348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다.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마.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내용 신설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우편번호 46504)
- 전화번호 : 051-309-4112
- 팩 스 : 051-309-4109
- 이 메 일 : miyeonk90@korea.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북구소식 → 입법예고)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을 “(구의 책무로)”로 하고, 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하게 하는 경우,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8조(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종전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h colspan="5">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th></tr>
<tr><td rowspan="2">청구인
대표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청구의 대상 및 취지</td><td colspan="4"></td></tr>
<tr><td>청구 이유</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td><td colspan="4">[ ]신청 [ ]필요없음</td></tr>
<tr><td><변경 사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td></tr>
<tr><td colspan="5">※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북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table>
<tr><td colspan="6">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td></tr>
<tr><td>주민투표
청구요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청구인대표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6">수임자</td><td>성명</td><td colspan="2">(서명 또는 날인)</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기간</td><td colspan="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성명</td><td colspan="2">(서명 또는 날인)</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기간</td><td colspan="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able>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북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table>
<tr><th colspan="6">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th></tr>
<tr><td>주민투표
청구요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청구인대표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6">수임자</td><td>성명</td><td>(서명 또는 날인)</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기간</td><td colspan="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성명</td><td>(서명 또는 날인)</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기간</td><td colspan="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 colspan="6">「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북구청장 (인)</td></tr>
<tr><td colspan="6">※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td></tr>
</table>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 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① ~ ③ (생 략)	제2조(구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외국인----------.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행정동 포함)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설치·분리 또는 병합, 구청사·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삭 제>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주소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열람기간·시간 및 동별 열람장소를 공고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하게 하는 경우, 구청장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은 회의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관계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삭제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신 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 (생 략)	제17조(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생 략)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 (생 략)	제19조(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조례 제10조제1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게시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서류

※ 작성요령

1. 성 명 :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 소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 상 :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제구청장 (인)

※ 첨부서류 : 관련서류

※ 작성요령

1. 성 명 :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 소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 상 :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제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 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서류

※ 작성요령

1. 성 명 :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 소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 상 :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제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제구청장 (인)

※ 첨부서류 : 관련서류

※ 작성요령

1. 성 명 :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 소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 상 :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제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 호 란 :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기재
2. 성 명 :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 소 : 도로명 주소까지 기재,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 상 :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 :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 중 ○권)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서류

※ 작성요령

1. 성 명 :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 소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 상 :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연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연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서류

※ 작성요령

1. 성 명 :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 소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3. 대 상 :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연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공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352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위법 기준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조항에 따른 적용조항 개정

▶ 제5조제1항 중

구분	당초	변경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	자전거 법 및 시행령 기준과 일치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

나. 상위법 조항에 따른 적용조항 추가(신설)

▶ 안 제5조제3항

구분	당초	변경
자전거 주차장 설치 완화	-	자전거 법 시행령에 따라 완화 (설치 기준의 2분의 1범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교통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청(교통행정과)

❍ 연락처 : 전화 051-309-4504, Fax 051-309-455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방문 등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해당 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해당 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8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외지역은 그렇지 않다.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 ---------- ----------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붙임 2]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공 고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3-357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의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주최·주관자가 없이 군중이 모이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조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적용범위를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까지 포함(안 제3조)

나.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라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북구청(안전총괄과)

○ 연락처 : 전화 051-309-4646 FAX 051-309-464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방문 등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개정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붙임 2]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행사를 말한다.
   가.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다. “체육”이란 운동 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단체·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아닌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내에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주최·주관하거나 주최·주관자가 없이”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를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하며,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최·주관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북구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통보를 하여야 한다.

1. 북구 또는 북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북구 또는 북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북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구청장"을 "그 밖에 구청장"으로 한다

8.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옥외행사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고, 계획수립을 위하여 경찰서·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1. ---------- ---------- ---------- ---------- .
<신 설>	가. ~ 다. (현행 제3호 ~ 제5호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6. ~ 10. (생 략)	3. ~ 7. (현행 제6호 ~ 제10호와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내에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주최・주관하거나 주최・주관자가 없이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 공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한다.
<신 설>	② 주최·주관자가 있는 1,000명 이상의 옥외행사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신 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 ---------- 북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북구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 ----------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위하여 행사개시 7일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	장은 ---------- ----------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 옥외행사 ---------- 변경통보---------- .
1.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1. 북구 또는 북구가 ------ ---------- 2. 북구 또는 북구가 ------ ---------- 3. 북구가 ---------- ---------- --------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
8. 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 ----------.
<신 설>	③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 관련부서에서 제1항에 준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옥외행사 관련부서의 장으로 하고, 계획수립을 위하여 경찰서・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